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6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3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6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이 개정(2003. 7. 30)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계획의 체계화 및 사회복지·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·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 - 대표협의체 :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,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·협력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건의
 - 실무협의체 :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
-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- 구성위원 :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
 - 대표협의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청장·생활복지국장·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

- 실무협의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자 중 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, 사회복지·보건의료업무 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함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(안 제6조)
- 각 협의체에 1인의 간사를 두며,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(안 제8조)
-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함 (안 제9조)
- 구청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(안 제11조)
- 협의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(안 제12조)
- 협의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음(안 제13조)
- 협의회 출석위원·전문가·관계인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(안 제14조)
-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음 (안 제15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